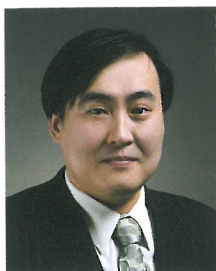


회원사를 위한 방송통신 법률 상식 ⑦

IPTV 요금과 관련한 규제체계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yjung@shinkim.com

지금으로부터 2년쯤 전, 즉 2009년 가을 정도에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촉진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이하 IPTV 사업법)의 개정논의가 있었다. 당시 논의되었던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법 상의 요금 승인제를 업체 자율에 의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무산되었다.

당시 위와 같은 요금 신고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콘텐츠 시장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 요지는 KT그룹이나 SK그룹과 같은 대규모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IPTV 사업자에게 요금 결정의 자율권을 주게 되면, 이러한 IPTV 사업자들은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하여 IPTV의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요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케이블TV 역시 요금을 인하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유료방송 제공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케이블 업체 및 IPTV 업체들이 방송 제작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안 그래도 영세성이 문제되고 있는 콘텐츠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여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큰 악영향을 줄 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은 모두 이용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케이블TV의 요금은 요금의 상한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IPTV는 요금의 하한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 승인제에 대해서는 앞서 칼럼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IPTV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청 점유율 제한 제도, 즉, IPTV는 권역별 유료방송 시장의 1/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서, IPTV 사업자가 가격을 아무리 많이 내리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시청가구 수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요금이 신고제로 전환되면 세간의 우려와 같이 콘텐츠 시장이 황폐화될 정도로 악화될지는 의문이라는 하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IPTV 사업자에게 요금 결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하여 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다시 IPTV의 요금과 관련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IPTV업체가 소위 실버요금제라는 것을 선보이면서 다시 방송 사업자들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버요금제란 노년층에 대해서는 훨씬싼 가격으로 IPTV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이다.

그렇다면, 현재 IPTV 사업법은 하한을 정하여 이용요금을 승인 받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요금제가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실버요금제가 가능한 것 역시 IPTV가 근본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통신과 방송의 결합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IPTV 상품은 원칙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방송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결합상품으로 판매되는데, 이러한 결합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시장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구분하여 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와 같이 구분회계를 하지 않는다면 통신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사업자가 방송을 부당하게 염가로 공급하여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고, 방송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사업자는 반대로 싼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PTV의 서비스 약관을 보면 IPTV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과 방송 서비스의 요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서비스별 할인을 역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실버요금제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IPTV에서 초고속인터넷상품을 떼어내고 방송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결합상품이던 IPTV 가격에서 초고속인터넷 상품가격이 빠지니 훨씬 싼 가격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IPTV 사업법이 이용요금의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약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 결합상품을 단독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용요금의 변경행위가 아니라(당연히 기존 IPTV 서비스에서의 요금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약관의 변경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신고만으로 실버요금제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IPTV 사업법 상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기존의 IPTV 요금에서 큰 폭의 할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의 노령화와 더불어 노년층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요금제는 요금 승인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겠지만,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IPTV 자체가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통신회사들이 이미 구축된 통신인프라를 사용하여 방송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닐 것이다. ☞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2010년 12월 13일, 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규모의 디지털미디어업체들에게 저작권, 계약, 보안 등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